

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요원 배치에 관한 규정

제정 1999. 7. 5 훈령 제 78호
개정 2005. 10. 5 훈령 제196호(법제사무 처리 규정)
일부개정 2013. 3. 8 훈령 제341호(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의2(보직관리기준)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담당요원 배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데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공무원에 적용한다. <개정 2013. 3. 8>

제3조(담당요원 배치 기준) 농업기술센터의 담당요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다.

1. 실근무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서 근무성적 우수자(근무성적 40% 이내인 자)
2. 제1호의 대상자 중 연수원(연구소) 또는 학교 해당 분야 전공자와 관내 농업기술상담소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우선 한다.

제4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용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훈령 제196호, 법제사무 처리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13. 3. 8 훈령 제341호,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부터 ③ 까지 생략

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요원 배치에 관한 규정

④ 「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담당요원 배치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농촌·생활지도사”를 “농촌지도사”로 한다.

⑤ 생략